

[] 갱 신
수렵면허 [] 재 발 급 신청서
[] 기재사항변경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(갱신) 5일 (재발급, 기재사항 변경) 즉시
신청인	성 명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
	주 소	
수렵면허증의 종류	[] 1종	[] 2종
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		
수렵 방법		
변경 사항	변경 전	변경 후
유효 기간	. . . ~ . . .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·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 서류	<p>1. 갱신하는 경우</p> <p>가. 신체검사서(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) 또는 「총포·도검·화약류등 단속법」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</p> <p>나. 증명사진 1장</p> <p>다. 수렵면허증</p> <p>라. 수렵 강습 이수증(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)</p> <p>2. 재발급받는 경우</p> <p>가. 수렵면허증(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)</p> <p>나. 증명사진 1장</p> <p>※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.</p>	수수료 10,000원
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